

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1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5월 14일)
상정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춘구)

□ 제안 사유

-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건립하는 장애인재활작업장 대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,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건실한 법인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.
- 위탁대상 시설물
 - ◆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5-3번지
 - ◆ 시설별 규모 : 지하1층, 지상5층, 철근콘크리트조
 - ◆ 대 지 면 적 : 1,549.80m²(468.81평)

건립시설	건축규모(㎡)		층 별	공간배치 활용
	대지면적	건축연면적		
계	1,549.80	3,424.62 (1,035.94평)		
장애인 재활지원센터	1,549.80 (468.81평)	355.86 (107.65평)	5층	- 강 당 (다목적홀 43평) - 야외휴게소(64평)
		631.22 (190.94평)	4층	- 재활자립작업장(43.5평) - 식당(32.2평), 매점
		631.22 (190.94평)	3층	- 재활자립작업장(130평)
		631.22 (190.94평)	2층	- 재활자립작업장(130평)
		646.83 (195.67평)	1층	- 목욕탕, 탈의실, 숙직실
		528.27 (159.80평)	지하1	- 기계실, 전기실, 발전실

□ 동의 요구내용

-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□ 위탁업무 추진계획

- 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관 모집공고 → 수탁기관 선정 → 위탁계약 체결 → 시설물 및 자료 인계인수 → 수탁기관 운영개시

□ 위탁방법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「부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
- 시설 운영방법 : 단일 수탁업체 선정 위탁운영

- 수탁 전제조건 :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 부담능력과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

□ 기대효과

-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
-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제공으로 안정된 경제·사회활동 보장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(민원)사항을 보았는가?	○ 성의 있게 보았음.
○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것인가?	○ 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의함.
○ 본 작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한가지로 운영되어야 하며,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는데?	○ 장애인복지법을 참조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할 계획임.
○ 일부 시민들이 작업장에 ‘주간보호시설’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은?	○ 본 작업장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, 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음.
○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 시설로 운영(신고)되어야 하며, 그 기능에 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운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	○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작업장과는 서로 기준이 다르며, 당초에 경기도 관련 조례에 의거 작업장으로 검토되어 온 사안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동의”

- ▶ 부대의견 :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어느 하나의 시설에 적합한 기능(사업)에 준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.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부천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101호
의결 년월일	2007. 5. 31 (제136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3. 1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○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건립하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 대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,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 여건이 건실한 법인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.

○ 위탁대상 시설물
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75-3번지
- 시설별 규모 : 지하1층, 지상5층, 철근콘크리트조
- 대지면적 : 1,549.80㎡(468.81평)

건립시설	건축규모(㎡)		층 별	공간배치 활용	비 고
	대지면적	건축 연면적			
계	1,549.80	3,424.62 (1,035.94평)			
장애인 재활지원센터	1,549.80 (468.81평)	355.86 (107.65평)	5층	- 강 당 (다목적홀 43평) - 야외휴게소(64평)	
		631.22 (190.94평)	4층	- 재활자립작업장(43.5평) - 식당(32.2평), 매점	
		631.22 (190.94평)	3층	- 재활자립작업장(130평)	
		631.22 (190.94평)	2층	- 재활자립작업장(130평)	
		646.83 (195.67평)	1층	- 목욕탕, 탈의실, 숙직실	
		528.27 (159.80평)	지하1	- 기계실, 전기실, 발전실	

□ 동의 요구내용

○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3항의 규정에

의거 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
구하고자 함

□ 위탁업무 추진계획

- 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관 모집공고 → 수탁기관 선정 →
위탁계약체결 → 시설물 및 자료 인계인수 → 수탁기관 운영개시

□ 위탁방법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및 「부천시 장애인재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수탁
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
- 시설 운영방법 : 단일 수탁업체 선정 위탁운영
- 수탁 전제조건 :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적 부담능력과 장애인의
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

□ 기대효과

-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
-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제공으로 안정된 경제·사회활동 보장